

論 文

審判研究官制度의 導入에 관한 研究

이 철 환\*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Official  
for the Maritime Accidents Inquiry System

C. H. Lee\*

<目 次>

Abstract	4. 기타 類似制度
1. 序 論	5. 審判研究官制度 導入의 必要性
2. 우리나라의 類似制度	6. 結 論
3. 외국의 類似制度	參考文獻

Abstract

For the first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in Korea, Central Marine Accidents Inquiry Committee were founded in Seoul and District Marine Accidents Inquiry Committee in Busan city in 1963 to determine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s and causes. At the present day, it was settled as Maritime Safety Tribunal through several revision of the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In Korea, there occurred about 800 cases of marine accident, and as a result, about 200 people were lost human lives in average per year.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ircumstances such as traffic increasing and being bigger in size, being faster in speed, etc., the causes of the marine accidents become complicated year by year. Accordingly, in this moment, it is meaningfu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Official who assists the Judges probing the cases fair and square. In this Pape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everal kinds of Research Official System, such as the Research Officia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apanese Supreme Court, Law Clerk in USA, etc., the selection, numbers, duty of the Research Official were stud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search Official to be appointed among the person having long enough career as a Judge, Investigator engaged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due to he should have capability to confirm perfectly logical judgement and to collect enough material for the conclusion of the causes of the case. The one who understands the foreign language is preferred for the study of the foreign cases;
2. It will be logical to post 3 joint Research Officials in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n Seoul after due consideration the cases treated a year;
3. It will be logical for the Research Official to perform the collection of material and inspection of the scene for the trial and inquiry of the cases, to attend the cases filed suit to the Supreme Court, to make commentarial papers regarding the judged cases, to collect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s and to devise a reform measure through in-depth analysis of the accidents frequently occurred, to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 정회원, 부산지방법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1. 序 論

우리나라의 海洋安全審判制度는 1961년 12월 6일 법률 제813호로 制定·公布된 海難審判法에 의하여 1963년 서울의 中央海難審判委員會 및 釜山, 仁川, 木浦의 地方海難審判委員會가 설치된 이래 수차례 걸친 법개정과 더불어 현재의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800건 정도의 海洋事故가 발생하여 200여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아직도 海洋事故多發國家라는 不名譽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海上交通量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海洋事故가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公明正大한 審判을 수행하는 막중한 責務를 부여받은 審判官을 보좌하기 위한 審判研究官制度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意味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審判研究官制度의 도입을 위하여 研究官의 선발, 구성, 업무의 배당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바 우선 우리나라 大法院의 재판研究官 및 憲法裁判所의 憲法研究官 등 유사제도와, 일본 最高裁判所의 調査官 및 미국 聯邦大法院의 Law Clerk 등 외국의 유사제도, 그 밖에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연구관제도와 일본의 高等海難審判廳의 調査官制度 등 현행의 각종 유사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 海洋安全審判制度에 적합한 審判研究官制度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의 類似制度

### 2.1 大法院의 裁判研究官制度

#### 2.1.1 裁判研究官制度의 도입

우리나라의 大法院에 裁判研究官制度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 12월 13일 개정된 法院組織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65년 11월에 처음으로 12명의 裁判研究官이 지명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71년에는 大法院判事의 增員에 따라 研究官의 수가 17명으로 되었다가, 1975년에는 15명의 大法院判事에게 2인씩의 研究官을, 그리고 大法院長에게 1인의 研究官을 두어 31명의 研究官을 지명하였다.

1981년에 大法院判事의 수가 12인으로 되자 24인의 研究官을 두었다가, 1983년에는 大法院長에 2인의

研究官을 추가하여 함께 26인의 研究官으로 되었고, 1990년 2월 12인의 大法官에게 專屬되는 2인씩의 研究官 24인 및 特別事件(行政事件)만을 취급하는 12인의 共同研究官을 두어 함께 36인으로 늘어났다.

이후 共同研究官의 增員 및 首席裁判研究官, 先任裁判研究官 등의 신설에 따라 2001년 6월 14일 현재 大法官 12명에 대한 專屬裁判研究官 각 2명씩 24명과 共同裁判研究官 26명 및 先任裁判研究官, 首席裁判研究官을 포함하여 52명의 裁判研究官을 두고 있다.

#### 2.1.2 裁判研究官의 選任과 職務

大法院의 裁判研究官은 大法院長이 지명하는데, 원칙적으로 地法部長 승진 직전의 단계에 있는 서열이 높은 高法判事 중에서 지명되고 있다.

1965년 裁判研究官制度가 처음 도입된 이래 1990년 2월 이전에는 1인 또는 2인의 裁判研究官이 각각 大法官에게 전속적으로 배속되어 특정의 大法官을 補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던 중 1984년의 제51차 및 1988년의 제76차 司法行政制度改善委員會 회의에서 大法院의 업무부담의 가중과 관련하여 研究官制度의 개선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 2월부터 36인의 研究官 중 24인은 2인씩 12인의 大法官에게 專屬되어 해당 大法官을 補佐하는 專屬研究官으로 하고, 나머지 12인은 특정의 大法官에게 專屬되지 아니하고 당시 大法院의 판례통일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던 行政訴訟事件 등 特別事件만을 연구하는 共同研究官으로 하는 등 制度상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sup>1)</sup>

共同研究官은 다시 行政事件을 주로 다루는 “特別組”와 一般民·刑事事件을 주로 다루는 “一般組”로 나누어져 운영되어 오다가 1992년 8월부터 民·刑事事件을 주로 다루는 “一般組”, 勤勞關係에 비롯하는 民事·行政事件 등을 다루는 “勤勞組”, 特許事件 및 著作權事件 등을 주로 다루는 “知的所有權組”, 租稅事件을 주로 다루는 “租稅組”, 一般的인 行政訴訟事件을 다루는 “一般行政組”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研究官制度의 운영은 위 特別組와 一般組에 따라 다르다. 대상사건이 行政訴訟 등 特別組의 대상사건인 경우는 사건이 大法院에 접수되어 主審大法官이 정해지면 먼저 首席裁判研究官에게 기록이 도달되고, 首席裁判研究官이 그 기록을 해당 特別組의 가장 상서열의 研究官인 組長에게 전달면 해당 組長은 組員들과

1) 梁三承, 전계서, 234쪽

협의하여 그 사건을 검토할 主審研究官을 지정하고, 그가 研究報告書를 작성하여 首席研究官을 통하여 主審 大法官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一般民·刑事事件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어 主審大法官이 정해지면 해당 大法官室에서 專屬研究官이 먼저 記錄을 檢討하여 그 자체에서 결론을 내릴 정도이면 그 단계에서 처리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首席裁判研究官에게 보내며, 그곳에 보내진 事件은 一般組에 의하여 앞서 본 特別組의 경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sup>2)</sup>

## 2.2 憲法裁判所의 研究官制度

### 2.2.1 憲法裁判制度和 研究官制度의 도입

우리나라 憲法裁判은 制憲憲法에서부터 채택되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의 制憲憲法에서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인과 國會議員 5인의 委員으로 구성된 憲法委員會<sup>3)</sup>를 두었으나 1950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간 단지 6건의 違憲法律審判事件을 처리하는데 그쳤다.<sup>4)</sup>

1960년 憲法에서는 憲法委員會를 없애는 대신 違憲法律審判, 權限爭議審判, 政黨解散審判, 彈劾裁判, 選舉訴訟審判 등을 담당하는 현재의 憲法裁判所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한 憲法裁判所制度<sup>5)</sup>를 도입하였으며, 憲法委員會와 달리 9명의 裁判官으로 이루어진 常設機關이었으나 5.16의 발생으로 憲法裁判所가 구성되지는 못하였다.

1962년 憲法에서는 憲法裁判機關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大法院으로 하여금 違憲法律審判<sup>6)</sup>과 政黨解散審判<sup>7)</sup>, 選舉訴訟審判을 하도록 했다가 1972년에 維新憲法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憲法委員會를 두어 違憲法律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을 맡게 하였으나<sup>8)</sup> 憲法

委員會의 違憲法律審判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sup>9)</sup>

1980년 憲法에서도 憲法委員會를 두어 違憲法律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을 맡게 하였다.<sup>10)</sup> 大法院 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이루어진 合議體에서 法律이 憲法에 違反된다고 認定하는 때에만 憲法委員會에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할 수 있게 함으로써 違憲法律審判을 종전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結果적으로 第4共和國과 마찬가지로 憲法委員會는 休眠機關이었으며, 이때까지는 憲法研究官制度가 도입되지 아니하였다.

1987년 現行憲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현재의 憲法裁判所制度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9월 1일 發效된 憲法裁判所法에 의하여 憲法研究官制度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憲法裁判所法 제정 당시에는 別定職 公務員인 憲法研究官을 두었으나<sup>11)</sup> 1991년 법 개정시 憲法研究官·研究官補 중 일부를 一般職 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憲法研究官 9인, 憲法研究官補 14인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외에, 憲法裁判所長의 派遣勤務 요청에 따라 9인의 判事가 法院에서, 5인의 檢事가 檢察廳에서, 1인이 法制處에서 파견나와 憲法研究官으로, 3인이 財政經濟部, 國防部, 國稅廳에서 파견나와 憲法研究官補로 근무하고 있고, 公法分野의 博士學位 소지자 중 3인이 研究員으로 채용되어 역시 事件의 審理 및 審判에 관한 調査·研究에 從事하고 있다.<sup>12)</sup>

### 2.2.2 憲法研究官의 選任과 職務

憲法研究官 또는 憲法研究官補는 憲法裁判所長의 명을 받아 事件의 審理 및 審判에 관한 調査·研究에 종사한다.

憲法研究官은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公認된 大學의 法律學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國會·政府 또는 法院等 國家機關에서 4級이상의

2) 梁三承, 전거서, 236쪽

3) 제헌헌법 제81조

4) 헌법재판소, "소개/역사/헌법재판의 역사", <http://www.ccourt.go.kr/introduction/history.asp>

5) 1960년 개정 헌법 제8장

6) 1962년 개정 헌법 제102조

7) 1962년 개정 헌법 제103조

8) 헌법위원회법(1973. 2. 16. 법률제2530호)

9) 헌법재판소, 같은 Internet 검색

10) 1980년 개정 헌법 제6장

11) 헌법재판소법 제19조

12) 헌법재판소, "소개/조직/헌법연구관·연구관보 및 연구원", <http://www.ccourt.go.kr/introduction/system.asp>

公務員으로서 5년이상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憲法裁判所에서 憲法研究官補로 5년이상 근무한 者 중에서 憲法裁判所長이 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 任免하도록 되어 있고,<sup>13)</sup> 憲法研究官補는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公認된 大學의 法律學 專任講師이상의 職에 있던 者, 法律學에 관한 博士學位 所持者로서 公法學에 專門的인 知識을 가진 者, 國會·政府 또는 法院等 國家機關에서 5級이상의 公務員으로서 4년이상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중에서 憲法裁判所長이 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 任免하도록 되어 있다.<sup>14)</sup>

憲法裁判所長은 다른 國家機關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 憲法研究官 또는 憲法研究官補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憲法裁判所에의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sup>15)</sup>

### 3. 외국의 類似制度

#### 3.1 일본 最高裁判所의 調査官制度

##### 3.1.1 調査官制度의 沿革

일본에서는 2차대전 후 법원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미국의 Law Clerk 制度를 본받아 最高裁判所와 高等裁判所에 調査官을 둘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였다.<sup>16)</sup> 그러나 당초에는 法官이 아닌 자로서 특수 분야의 專門家를 調査官으로 영입할 의도였으나 1949년 6월 1일 裁判所法을 개정하여 法官을 調査官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이래, 最高裁判所의 調査官은 法官으로 충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

히 일본 最高裁判所의 15인의 裁判官 중 5인 이내는 職業的인 法律家가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될 수도 있으므로,<sup>17)</sup> 특히 法官인 調査官에 의한 裁判業務의 보조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 3.1.2 調査官의 選任과 職務

最高裁判所의 調査官의 수는 최초에는 6명이었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 7월 현재 34명에 이르고 있다.<sup>18)</sup> 調査官은 裁判官 개인의 비서진이 아니라, 裁判官과 마찬가지로 上告事件을 배당받아 같은 사건의 主任裁判官(裁判長)을 補佐하며, 調査官 전체가 15인의 最高裁判所 裁判官을 補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最高裁判所의 調査官 34인은 1인의 首席調査官을 정점으로 하여 民事調査官室, 刑事調査官室 및 行政調査官室의 3개의 室로 나누어져 있다. 각 調査官室에는 각 1인의 上席調査官이 있고, 각 室에 배치되는 調査官의 수는 업무량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현재는 民事調査官室 18인, 刑事調査官室 9인, 行政調査官室 6인이 배치되어 있다.<sup>19)</sup>

調査官의 選任對象은 首席調査官의 경우는 地方裁判所의 所長 또는 高等裁判所의 裁判長을 거친 자, 그의 調査官의 경우는 裁判官 임관 후 9년이 넘은 자이나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 연령 45세 정도이다. 각 調査官室의 上席調査官은 地方裁判所의 裁判長을 거친 자 또는 地方裁判所 所長으로 진출되기 직전의 자이고, 기타의 調査官은 임관 후 10년이 넘은 자로서 地方裁判所 裁判長으로 진출되기 직전의 자이다. 그리고 일단 調査官으로 選拔되면 통상 5년 정도의 기간동안 調査官으로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13) 憲法裁判所法 제19조제4항

14) 憲法裁判所法 제19조제5항

15) 憲法裁判所法 제19조제6항)

16) 日本裁判所法 第五十七條 (裁判所調査官) 最高裁判所、各高等裁判所及び各地方裁判所に裁判所調査官を置く。

17) 日本裁判所法 第四十一條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任命資格)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識見の高い、法律の素養のある年齢四十年以上の者の中からこれを任命し、そのうち少くとも十人は、十年以上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職の一若しくは二に在つた者又は左の各号に掲げる職の一若しくは二以上に在つてその年數を通算して二十年以上にな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高等裁判所長官

二 判事

三 簡易裁判所判事

四 檢察官

五 弁護士

六 別に法律で定める大學の法律學の教授又は助教授

18) 日本全司法最高裁支部, “司法制度改革提言骨子案(第2次)”, <http://www.zenshiho.net/070701.html>

19) 日本全司法最高裁支部, 같은 인터넷 검색

最高裁判所 調査官室의 운영방식은 民事·行政事件의 경우와 刑事事件의 경우가 약간 다르다. 즉 民事·行政事件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기록이 主審裁判官에게 회부되기 이전에 먼저 調査官室에 사건이 회부되고, 主審 調査官이 정해지면 主審 調査官이 主審 裁判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문제점을 整理·分析·調査하여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 主審 裁判官에게 보고한다.

이에 반하여 刑事事件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主審 裁判官이 속하는 小法院에 대응하는 調査官室에 사건이 먼저 회부되고, 主審 調査官이 정해지면 主審 調査官이 독자적으로 문제점을 정리·조사하여 調査報告書를 작성한 후 主審裁判官에게 보고한다.

主審 調査官으로 정해지면 우선, 기록과 上告理由書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爭點과 職權調査事項 등에 관한 문제점의 파악, 學說·判例·外國事例 기타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調査官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論點을 추출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調査報告書를 작성, 主審裁判官의 審理·判斷의 자료로 제출한다.

上告事件 중 변론을 열 사건이 있으면 書記官室과 상의하여 일정을 잡고, 화해를 시도할 사건은 직접 당사자와 면접하기도 하고, 囑託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는 囑託判事와 만나기도 한다. 刑事사건에 있어서 保釋청구를 한 경우 담당 辯護士와 면담하는 등 裁判活動을 보조하기도 한다.

일본 最高裁判所의 調査官에 대한 특이사항은 調査官이 裁判官의 合意時에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거나 意見開陳까지도 허용된다는 점이다. 다만 評決時에는 퇴장한다.

調査官은 이상과 같이 裁判官을 보조하는 활동 이외에도 研究活動으로서 民事調査官研究會 등을 열어 각 調査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서로 意見交換과 討論을 하며, 判例集에 등재할 판례를 선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도 하고, 그가 調査報告한 事件이 宣告되면, 이에 관한 判例解説을 작성하기도 한다.

### 3.2 미국의 Law Clerk制度

#### 3.2.1 Law Clerk制度의 沿革

미국 法院에서 判事를 보좌하는 Law Clerk을 처음 채용한 것은 1875년의 Massachusetts주 大法院 判事인 Horace Gray에 의하여 개인의 비용으로 Harvard Law School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를 채용한 것이다. 그 후 1882년 위 Horace Gray가 미국 聯邦大法院의 判事로 임명된 후에도, 역시 자기의 비용으로 Harvard Law School 최고우등생을 그의 Law Clerk으로 채용하였다. 그리고 1886년에는 聯邦議會가 Law Clerk制度의 유용성을 인정하여 각 判事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1명씩의 專屬 Clerkship을 제공한 이래 모든 判事が 이 방식을 도입하여 Law Clerk을 채용하기에 이르렀다.<sup>20)</sup>

#### 3.2.2 Law Clerk의 선임과 임무

미국의 聯邦大法院을 포함한 거의 모든 法院에서의 Law Clerk의 채용은 判事の 개인적인 피고용자이므로, 각자의 독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Law Clerk을 채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에 우수한 Law School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선발되는데, 학교장의 추천, 직접 면접, 서류심사, 동료 裁判官 또는 下級法院 判事の 추천 등으로 채용한다. Law Clerk의 수는 1886년 聯邦議會가 미국 聯邦大法院에 1인씩의 Clerkship을 제공한 이래 1888년에는 9인의 判事 모두가 1인씩의 Law Clerk을 채용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사건의 증가와 함께 그 수가 증가되어 1947년에는 2인씩, 1967년에는 3인씩으로 각 증가되었다가 현재에는 4인씩의 Law Clerk을 두게 되었다.<sup>21)</sup>

미국의 Law Clerk은 判事の 개인적인 피고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각 判事の 취향에 따라 그를 돕는 구조를 가지므로 Law Clerk들이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大法院長은 首席 Law Clerk인 Senior Law Clerk이 1명 더 있다.

또한 Law Clerk은 통상 1년 또는 2년의 단기간 동안만 근무하므로 업무에 계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Central Legal Staff 또는 Staff Attorney 등으로 불리는 制度를 도입하여, 熟達된 法律家로 하여금 상당기간에 걸쳐서 法院의 判事들을 共通적으로 돕게 하고

20) 賈在桓, “大法院 裁判研究官制度 - 日本의 最高裁判所 調査官制度와 美國의 Law Clerk 制度와의 實務運營上依 比較”, 民事判例研究 5卷(1988년 5월), 419쪽

21) 梁三承, 전계서, 243쪽

있으며, 聯邦大法院의 경우에는 법원 전체 또는 大法院長의 일을 돕기 위하여 House Lawyer 또는 Staff Lawyer라고 불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인을 4년 임기로 채용하고 있다.<sup>22)</sup>

Law Clerk의 임무는 자기가 소속된 判事의 업무 방식, 성향, 기질 등에 전적으로 달려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 調査·研究의 결과를 報告書(Legal Memorandum)로 정리하고,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意見書(Draft Opinion)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判決文을 작성함에 있어서, 判事의 지시 또는 논리에 따라 判決의 草案을 작성하는 것도 역시 Law Clerk의 중요한 임무이다. 이와 같이 Law Clerk은 특정의 判事 개인에게 專屬되어 그의 趣向에 따라 보좌하는 등 裁判官의 專屬副官으로서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고 있다.<sup>23)</sup>

#### 4. 기타 類似制度

##### 4.1 檢察研究官

檢察廳法 第15條에 따라 大檢察廳에 檢察總長을 補佐하고 檢察事務에 관한 企劃·調査 및 研究에 從事하는 檢察研究官을 둘 수 있으며, 檢察研究官은 檢事로 補하고,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의 檢事를 兼任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檢察研究官은 檢察制度의 發展을 위해 全般的인 領域에 걸친 研究業務를 遂行하는 檢察內에서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一線 支廳檢事들의 意見을 收斂·分析하여 上部의 政策決定·樹立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並行한다.

현재 大檢察廳에는 20명의 檢察研究官이 活躍하고 있다.

##### 4.2 일본 高等海難審判廳 調査官<sup>24)</sup>

日本國土交通省令第5号인 海難審判廳組織規則 第4

條에 의하면 高等海難審判廳에 調査官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 調査官은 高等海難審判廳長官의 命을 받아 海難事件의 審判에 있어서 필요한 調査, 行政訴訟에 관련하여 필요한 事務, 기타 특별히 정한 사항에 관련된 事務를 擔當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자우편을 통하여 日本 高等海難審判廳으로부터 직접 입수한 정보<sup>25)</sup>에 의하면 2명의 調査官이 高等海難審判廳에 배치되어 있으며, 調査官이 되기 위한 특별한 資格要件은 없으나 高等海難審判廳長官이 審判官, 理事官<sup>26)</sup>, 事務官<sup>27)</sup> 가운데서 任命하는데, 調査官의 所掌業務는 海難審判廳組織規則第4條에서 규정하 대로 高等海難審判廳長官으로부터 命을 받아 所掌課와 협력하여 審判에 必要한 調査 또는 訴訟에 관한 事務를 수행하거나, 政策의 업무 등 特命事項으로 주어진 事務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다른 法令의 規定이나 별도의 內部規定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審判研究官制度 導入의 必要性

海洋安全審判院의 目的은 海洋事故에 대한 調査 및 審判을 통하여 海洋事故의 原因을 糾明함으로써 海洋安全의 確保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海洋安全確保를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原因의 糾明과 더욱 深度있는 研究·分析이 요구된다.

또한 海洋安全審判은 行政審判의 일종으로 民·刑事에 비하여 節次가 간단하기는 하나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罰을 隨伴하기 때문에 그 節次에 있어서 進歩된 裁判의 諸原則을 대부분 採擇하고 있으며, 海洋事故關聯者의 利益이 不當하게 制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海洋事故가 接受되어 각 審判官에게 配當되면 記錄을 檢討하여 原因糾明에 있어서의 爭點이 있으면 關聯法令에 대한 檢討 및 이에 관련된 審判事例, 國內外法院에 의한 判例, 學說, 實務 등에 관한 資料를 收集하고 整理·分析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건에 따라서

22) 梁三承, 전계서, 244쪽

23) 梁三承, 전계서, 245쪽

24) 우리 해양안전심판제도의 조사관과는 다르며, 심판연구관에 해당

25) 高等海難審判廳總務課企室係長인 佐野씨와 E-Mail로 교신하여 수집한 정보

26) 우리 해양안전심판제도의 조사관에 해당

27)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사무관·서기관에 해당

는 우리나라 자체의 事例나 文獻 등 參考할 資料가 거의 없거나 不足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不可避하게 外國의 資料들을 參考해야 할 것이다.

原因糾明에 관한 結論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裁決書를 作成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裁決書의 作成作業은 海洋安全審判의 結果를 外部的으로 公表하는 것으로서 論理的으로 完璧한 裁決書를 作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및 外國의 유사제도에 관하여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海洋安全審判實務에 대한 충분한 知識과 經驗을 쌓은 상당한 經歷을 가진 審判官 또는 調査官 經歷者가 審判官을 補佐하게 한다면 精確한 原因糾明 및 研究·分析에 의한 海洋安全의 確保 및 公明正大한 審判의 確立에 一助할 수 있을 것이다.

## 6. 結論

우리나라의 海洋安全審判制度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審判研究官制度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海洋安全審判의 特殊性을 勘案하여야 할 것이다.

審判研究官의 本來的인 機能이 審判官을 效果的으로 補佐하는 것이라면, 각 審判官에게 配當된 사건에 대한 記錄을 檢討하여 필요한 法令, 審判事例, 國內外法院에 의한 判例, 學說, 實務 등에 관한 資料를 收集하고 整理·分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審判實務에 상당기간 근무하여 裁決書作成에 익숙한 자를 研究官으로 選任한다면 審判官의 裁決書作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바람직한 研究官의 모습을

綜合하면, 審判院에서 審判實務에 상당기간 종사하여 충분한 實務經驗을 가지고 있고, 事件을 合理的으로 分析하여 그 結論을 論理整然하게 構成하여 裁決書形態로 作成할 수 있는 理論的인 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原因糾明에 관한 結論을 도출해 내는데 필요한 충분한 資料를 收集할 수 있고, 外國語 解讀可能한 字어에 할 것이다.

研究官의 數는 不足해서도 안되지만 무작정 그 數가 많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研究官 또는 調査官制度를 참고로 하고, 海洋安全審判院의 事件處理件數<sup>28)</sup> 등을 勘案하면, 각 審判官의 專屬研究官을 두기보다는 研究官補를 포함한 3명 정도의 共同研究官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審判官으로 임명되어 審判業務에 從事해야 하는 現行의 審判官任用制度를 勘案하여 地方審判院 審判官 또는 地方審判院 首席調査官 및 中央審判院 調査官 중에서 中海審 審判官 진출대상자를 研究官(4급, 1명)으로 보하여 中海審 審判官으로의 진출을 대비하게 하고, 地方審判院 審判官 임명대기자를 研究官補(5급, 2명)로 보하여 業務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審判研究官에게 配當될 業務를 살펴보면, 本來的인 業務로서 事件의 審理 및 原因糾明을 위한 資料調査 및 現場調査의 수행, 裁決書 작성보조, 大法院에 提起된 訴에 대한 裁判業務의 수행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의 業務로서 裁決된 事件에 대한 解說書 作成, 海洋事故 事例集 수록대상사건 선정 및 事例集 발간, 海洋事故의 統計 및 多發性 事件에 대한 深層의 分析을 통한 海洋安全의 確保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도출, 海洋安全審判制度의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8) 해양안전심판원 재결(Judge's Inquiry) 건수 통계표(중안해양안전심판원 통계)

Unit : Number of Case

Year	Transferred from Last Year	Reception of this year	Total	Judgement	Transfer to next year
1996	79	405	484	437(*438)	46
1997	46	370	416	330(*331)	85
1998	85	374	459	387	72
1999	72	373	445	346	99
2000	99	276	375	308(*309)	66

\* Number of case included the dismissal decision

또한, 審判研究官制度의 도입을 계기로 海洋事故의 原因, 實態의 分析 등에 관한 정보제공의 기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海洋安全審判 및 海洋事故防止에 관한 지식을 널리 알리는 등 海洋事故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1] 賈在桓, “大法院 裁判研究官制度 - 日本의 最高裁調査官制度和 美國의 Law Clerk 制度와의 實務運營上依 比較”, 民事判例研究 5卷(1988년 5월)
- [2] 梁三承, “憲法研究官制度의 改善方案”, 憲法論叢 第3輯
- [3] 法律新聞社, “司法補佐官制度에 관하여”, 法律新聞 第2288号, 1994년
- [4] 헌법재판소, “소개/조직”, <http://www.ccourt.go.kr/introduction/system.asp>
- [5] 헌법재판소, “소개/역사”, <http://www.ccourt.go.kr/introduction/history.asp>
- [6] 헌법재판소, “도서관/문헌자료실/헌법재판관련법령”, [http://www.ccourt.go.kr/library/docu\\_material.asp](http://www.ccourt.go.kr/library/docu_material.asp)
- [7] 대검찰청, “검찰소개/검찰구조및업무”, <http://www.sppo.go.kr/intro/work.htm>
- [8] OSEO.COM, “법원·검찰청·행정부 안내/조직도/검찰청/대검찰청”, [http://www.oseo.com/people/organ/db\\_gum0.asp?seq\\_no=7](http://www.oseo.com/people/organ/db_gum0.asp?seq_no=7)
- [9] OSEO.COM, “법원·검찰청·행정부 안내/조직도/법원”, [http://www.oseo.com/people/organ/db\\_bup0.asp?seq\\_no=16](http://www.oseo.com/people/organ/db_bup0.asp?seq_no=16)
- [10] 日本全司法最高裁支部, “司法制度改革提言骨子案 (第2次)”, <http://www.zenshiho.net/070701.html>
- [11] 日本高等海難審判廳, “MAIA/Organization and Jurisdiction”, <http://www.mlit.go.jp/maia/index.htm>

---

원고접수일 2002년 12월 19일

원고채택일 2003년 1월 20일